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003

발의연월일: 2022. 3. 29.

발 의 자:민형배·김병욱·김영배

김의겸 · 김진표 · 김철민

박상혁 • 박성준 • 변재일

신정훈 · 윤미향 · 이정문

정필모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성폭력범죄,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,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합니다.

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, 반복성, 상습성을 특징으로 합니다. 재범위험성이 높습니다. 재범방지를 위해 스토킹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포함해야 합니다. 형사법상으로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닙니다.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스토킹범죄자 중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가적으로 부착해,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형 집행유예기 간 중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가해자는 활보하고 피해자는 불안해하는 잘못된 사회 구조 바뀌어야 합니다.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2조, 제5조 및 제21조의2).

법률 제 호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살인범죄 및 강도범죄"를 "살인범죄,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4. "스토킹범죄"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 조의 죄를 말한다.

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및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4항"을 각각 "제5항"으로 한다.

-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- 1.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
- 2.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
- 3.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(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

포함한다)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21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"특정범죄"란 성폭력범죄,	1
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, <u>살</u>	<u>살</u>
<u>인범죄 및 강도범죄</u> 를 말한	인범죄,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
다.	<u> 죄</u>
2. ~ 3의3. (생 략)	2. ~ 3의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의4. "스토킹범죄"란 「스토킹
	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
	률」 제18조의 죄를 말한다.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 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1.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 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 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

<u>(5)</u> 7	세1항	부터	제4	<u>항</u> 까지]의	규
정에	따른	는 부	착명	령의	청구	는
공소	가 제	기된	특.	정범죄	사건	의
항소	심 변	[론종	결	시까지	하	여
야 힌	난다.					

- <u>⑥</u> (생 략)
- ① 제1항부터 <u>제4항</u>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수 없다.
- 제21조의2(보호관찰명령의 청구) 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
토킹범죄를 저지른 때
2.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
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
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
범죄를 저지른 때
3.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
여(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
경우를 포함한다) 그 습벽이
인정된 때
<u>⑥</u> <u>제5항</u>
<u>.</u>
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
<u> ⑧</u> <u>제5항</u>
21조의2(보호관찰명령의 청구)

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(이하 "보호관찰명령"이라 한다)을 법원에 청구할 수있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